

第107回(定例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4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 目 次

1. 서울特別市自治區의財源調整에 관한條例改正建議要求(案) .....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管理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8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洞事務所名稱과所在地및管轄區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10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	12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14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	16面
7. 서울特別市鐘路區食品振興基金條例(案) .....	18面

### 1.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건의요구(안)

의 안	775
번호	

제출년월일: 2000. 11.

제 출 자: 선상선의원의원외 5인

#### 1. 주 문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별표2 측정단위별수치 산정기준을 현행 19개 항 외에 다음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을 요구함

○ 다 음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234조의11(재산세, 종토세의 국가등 비과세)

지방세법 제184조, 제234조의12(재산세, 종토세의 종교 등 시설에 대한 비과세) 대상건수

#### 2. 제안이유

가. 우리 종로구는 서울의 심장부로서 청와대, 정부 중앙청사,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공공기관 106개소, 교육기관 68개소, 외국공관 27개소 등이 있고,

나. 창경궁,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과 국보 69, 보물 27, 사적 16, 천연기념물 7 등 총 284점이 있으며, 조계사 본산,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기독교 연합회관, 천도교 수운회관 등 종교시설을 포함해서 비과세 대상면적이 전체의 66.7%에 달하고 있으나, 반면 호적인구는 140만, 주간 유동인구 이삼백만 등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수요는 시 및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심지로서 추가부담이 유발되고 있어 같은 중심지역이며 인접 지역인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100%에 달하고 있으나

다. 우리 구는 70% 내외를 유지하는 불합리가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 시정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구간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를 두어 우리 구와 같은 입지를 가진 구의 재원을 조정하고 있으나

라. 본 조례의 측정치 가운데 우리 구와 같이 예산수요는 많으나 비과세지가 많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자치구에 대한 고려 단위가 없어 조정조례로서의 기능유지가 미흡하여 주문과 같이 합리적 기준을 두도록 건의 요구함.

### 3. 참고사항

#### 가. 건의이유 입증자료

##### ○ 토 지

- 전체면적 : 2,392만㎡
- 과세대상 면적 : 793만 5,000㎡(33.3%)
- 비과세 총면적 : 1,598만 5,000㎡(66.7%)

##### ○ 종로구에만 소재한 특수 공공시설 및 사적지

- 특수한 국가시설 : 청와대, 총리공관, 감사원, 기무사 등
- 정부기관 및 공공시설 : 정부종합청사, 문화관광부, 기상청, 서울지방경찰청, 세종문화회관 등
- 사적지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운현궁, 종묘, 파고다공원 등
- 종교시설 : 조계사, 기독교연합회관, 기독교100주년기념관 등
- 기 타 : 미국대사관 및 관사, 서울대학병원,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 ○ 비과세 산출세액

- 합계 세액 : 306만㎡ 192억 3,300만원
- 종합토지세 : 246만 4,000㎡ 189억 400만원
- 재 산 세 : 59만 6,000㎡ 3억 2,900만원

##### ○ 비과세 유형별 현황

- 합계세액 : 35건 192억 3,300만원
- 국가기관 : 9건 50억 2,600만원
- 사 적 지 : 8건 34억만원
- 공 원 : 3건 5억 2,800만원
- 외국기관 : 5건 5억 9,500만원
- 종교시설 : 4건 2억 5,000백만원
- 문화시설등 : 6건 94억 3,400만원

##### ○ '99 종로구 세입 및 조정교부금 현황

- 합 계 : 684억 5,500만원
- 구 세 : 420억 4,000만원(61.4%)
- 면허세 : 18억 2,700만원
- 재산세 : 69억 9,600만원

- . 종합토지세 : 248억 9,900만원
- . 사업소세 : 77억 4,300만원
- . 과년도구세 : 5억 7,500만원
- 조정교부금 : 264억 1,500만원(38.6%)

## 4. 비과세 토지 및 건물내역

 국가기관

(단위 : 천원)

연 번	명 칭	소재지	비과세물건		종합토지세	비 고 (합계세액)
			종류	면적(m <sup>2</sup> )	재산세	
	계		토지	384,925	4,907,695	5,025,912
			건물	239,494	118,217	
1	청와대	세종로1	토지	227,672	1,064,929	1,081,627
			건물	37,107	16,698	
2	감사원	삼청동25-23	토지	21,312	37,457	46,898
			건물	20,981	9,441	
3	총리공관	삼청동106	토지	14,876	47,093	47,989
			건물	1,990	896	
4	정부종합청사	세종로77-6	토지	41,905	2,977,482	3,014,480
			건물	85,054	36,998	
5	문화관광부	세종로82-1	토지	6,400	282,691	286,511
			건물	9,871	3,820	
6	기상청	송월동1	토지	24,951	84,374	87,897
			건물	7,940	3,523	
7	서울지방경찰청	내자동200-11	토지	16,199	270,878	314,044
			건물	65,107	43,166	
8	기무사	소격동165	토지	27,308	129,446	131,435
			건물	4,421	1,989	
9	정부기록전산실	창성동117-6	토지	4,302	13,345	15,031
			건물	7,023	1,686	

사적지

(단위 : 천원)

연 번	명 칭	소재지	비과세물건		종합토지세	비고
			종류	면적(m <sup>2</sup> )		
	계		토지	1,405,080	3,400,150	
1	경복궁	세종로1	토지	308,264	2,021,521	
2	창경궁	와룡동2-1	토지	215,713	123,008	
3	창덕궁	와룡동2-71	토지	565,225	322,314	
4	운현궁	운니동98-50	토지	7,107	27,018	
5	경희궁	신문로2가2-1	토지	100,930	174,402	
6	종묘	훈정동90	토지	196,731	679,902	
7	동묘	승인동238-1	토지	9,332	36,511	
8	동대문	종로6가69	토지	1,778	15,474	

공원

(단위 : 천원)

연 번	명 칭	소재지	비과세물건		종합토지세	비고
			종류	면적(m <sup>2</sup> )		
	계		토지	385,598	528,535	
1	파고다공원	종로2가38-1	토지	15,720	203,731	
2	사직공원	사직동1-48	토지	168,099	145,237	
3	낙산근린공원	동숭동 산2	토지	201,779	179,567	

외국기관

(단위 : 천원)

연 번	명칭	소재지	비과세물건		종합토지세	비고 (합계세액)
			종류	면적(m <sup>2</sup> )	재산세	
	계		토지	84,817	588,200	595,109
			건물	19,094	6,909	
1	미국대사관	세종로82-14	토지	6,488	287,090	290,910
			건물	9,871	3,820	
2	미국대사관저	사간동34-30	토지	35,876	160,780	162,604
			건물	6,754	1,824	
3	체코대사관	신문로2가 1-121	토지	728	1,595	2,275
			건물	1,030	680	
4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신문로2가 1-268	토지	521	1,182	1,726
			건물	1,208	544	
5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저	가회동1-6	토지	41,204	137,553	137,594
			건물	231	41	

종교시설

(단위 : 천원)

연 번	명칭	소재지	비과세물건		종합토지세	비고 (합계세액)
			종류	면적(m <sup>2</sup> )	재산세	
	계		토지	26,436	219,483	250,278
			물건	57,808	30,795	
1	조계사	견지동45	토지	13,578	90,679	92,262
			물건	2,005	1,583	
2	기독교100주년기념관	연지동135	토지	5,346	57,244	63,144
			물건	8,939	5,900	
3	기독교연합회관	연지동136-56	토지	4,509	45,526	63,619
			물건	27,384	18,093	
4	여전도회관	연지동1-1	토지	3,003	26,034	31,253
			물건	7,907	5,219	

## □ 문화시설 등

(단위 : 천원)

연 번	명칭	소재지	비과세물건		종합토지세	비고 (합계세액)
			종류	면적(m <sup>2</sup> )	재산세	
	계		토지	177,567	9,260,405	9,434,046
			건물	279,979	173,641	
1	세종문화회관	세종로83-1	토지	21,091	1,347,475	1,371,419
			건물	55,043	23,944	
2	서울시교육위원회	신문로2가2-64	토지	6,482	5,448,140	5,451,831
			건물	6,181	3,691	
3	한국방송대학	동송동169	토지	16,269	245,481	259,026
			건물	20,522	13,545	
4	서울대학병원	연건동28	토지	92,246	2,113,042	2,235,198
			건물	185,085	122,156	
5	정독도서관	화동1	토지	38,470	94,742	100,592
			건물	12,999	5,850	
6	이화장	이화동1	토지	3,009	11,525	15,980
			건물	149	4,455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건의요구서

1. 주 문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별표2 측정단위별수치 산정기준을 현행 19개항 외에 다음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을 요구함

○ 다 음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234조의11(재산세, 종토세의 국가등 비과세)

지방세법 제184조, 제234조의12(재산세, 종토세의 종교등 시설에 대한 비과세) 대상건수

2. 건의이유

가. 우리 종로구는 서울의 심장부로서 청와대, 정부 중앙청사,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공공기관 106개소, 교육기관 68개소, 외국공관 27개소 등이 있고,

나. 창경궁,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과 국보 69, 보물 27, 사적 16, 천연기념물 7 등 총 284점이 있으며, 조계사 본산,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기독교 연합회관, 천도교 수운회관 등 종교시설을 포함해서 비과세 대상 면적이 전체의 66.7%에 달하고 있으나, 반면 호적인구는 140만, 주간 유동인구 2~300만 등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수요는 시 및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심지로서 추가 부담이 유발되고 있어 같은 중심지역이며 인접 지역인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100%에 달하고 있으나

다. 우리 구는 70% 내외를 유지하는 불합리가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 시정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구간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두어 우리 구와 같은 입지를 가진 구의 재원을 조정하고 있으나

라. 본 조례의 측정치 가운데 우리 구와 같이 예산수요는 많으나 비과세지가 많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자치구에 대한 고려 단위가 없어 조정 조례로서의 기능유지가 미흡하여 주문과 같이 합리적 기준을 두도록 건의 요구함

2.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76
----------	-----

제출년월일:2000.11. .

제출자: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2000년도 제1차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2000.9.28)의 심의결과에 따라 종로구 구민회관의 대관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입장권 사전검인제도에 의한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구민회관 대관 사용자의 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제9조제2항의 구민회관 대관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시에 사전검인을 받도록 한 것을 입장 수익 총액을 대관사용 종료 후 통보하도록 하여 구민회관 대관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

3. 개정근거

2000년도 제1차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종로구 기예 05090-1318 2000.10. 4)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입장권은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를 “시설사용 종료 후 입장수의 총액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①(생략) ②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생략)	제9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①(현행과 같음). ② -----, 시설사용 종료 후 입장수의 총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77
----------	-----

제출년월일 : 2000.11.

제출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사직동 관할구역의 세종로 100번지 일대가 종로1.2.3.4가동의 방향으로 도로(세종로 동측)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세종로 100번지 일대를 사직동에서 종로1.2.3.4가동으로 행정동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사직동 관할의 법정동인 세종로100번지 일대를 종로1.2.3.4가동으로 행정동을 변경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구청장방침(총무31600-2853,2000.10.6)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사직동의 법정동 관할(전지역 관할)란 중 “세종로(1번지 제외)”를 “세종로(1, 76-2, 76-14, 82-1, 82-14, 100, 139번지 제외)”로 하고, 종로1.2.3.4가동의 법정동 관할(일부지역 관할)란에 “세종로(76-2, 76-14, 82-1, 82-14, 100, 139번지)”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동사 무소 명칭	동사 무소 소재지	전지역 관할	일부지역 관 할	구 분	동사 무소 명칭	동사 무소 소재지	전지역 관할	일부지역 관 할
	사직동	사직동 1-48	사직동, 체부동, 필운동, 내자동, 통의동, 적선동, 도림동, 당주동, 내수동, 신문로1가, 신문로2가, 세종로(1번지 제외)			사직동	사직동 1-48	..... ..... ..... ..... .....세종로(1,76-2,76-14,82-1,82-14,100,139번지 제외)	
	종로 1·2·3· 4가동	종로 2가 39-2	(생략)	〈신설〉		종로 1·2·3· 4가동	종로 2가 39-2	(현행과 같음)	세종로(76-2,76-14,82-1,100,139번지)

4.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78
----------	-----

제출년월일 : 2000. 11.

제출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2000년 제1차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규제사무로 확정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조항에 대해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며 명확한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조문 삭제
  -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안 제9조제1항제1호)
  -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안 제9조제1항 제2호)
  -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안 제9조제5호)

3. 개정근거

- 행정규제기본법제4조(규제법정주의),제5조(규제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적용지침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급정지)①-----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때	<삭 제>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삭 제>
3.~4.(생 략)	3.~4.(현행과 같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삭 제>

5. 서울특별시종로구청·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79
----------	-----

제출년월일 : 2000. 11.

제출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조항에 명시적으로 남녀 차별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여성차별적 조문 삭제(안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3. 개정근거

- 남녀차별금지법제1조(목적),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덕망과 신임이 있는 60세 이하의 민방위대에 편성된 활동적인 자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제1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생략) ②통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2.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 ④(생략)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현행과 같음) ② ----- ----- -- 1.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덕망과 신임이 있는 60세 이하의 민방위대에 편성된 활동적인 자  <삭제> 3. 제1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 ④(현행과 같음)

6.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80
----------	-----

제출년월일 : 2000.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 사무관리규정개정(대통령령 제16521호, 1999.8.7)에 의거 우리 구 공인조례를 효율적으로 일부 보완하여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관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인을 전자 입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각부서에서 사용하도록 신설 (안 제2조제3항)

3. 개정근거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제16521호, 1999.8.7)제21조, 제36조제3항 및 제37조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③구청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새겨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 입력하여 처리과의 장이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인의 종류)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제2조(공인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새겨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처리과의 장이 사용하여야 한다.

7.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의안 번호	781
----------	-----

제출년월일 : 2000. 11  
제출자 : 종로구청장

1. 제정이유

- 식품위생법 제71조, 동법65조제4항(법률 제6154호, 2000.1.12)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2(령 제16922호, 2000.7.27)의 개정으로 식품진흥기금 재원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이 서울특별시와 구에 각각 40%:60%로 배분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목적
- 나.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출연금, 기타 등으로 조성
- 다. 기금의 용도
  -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 라. 기금의 관리·운용
- 마.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 심의회는 위원장(생활복지국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
  - 심의회 기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 바.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등
- 사.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3. 제정근거

- 식품위생법(제71조,65조) 같은법시행령(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2조, 제43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라 함은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7. 기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생활복지국장
2. 기금출납원 : 환경위생과장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정·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위생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 종로구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4. 동장

④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환경위생과기금담당주사가 된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 3 장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용자

제7조(용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자총액·용자한도·용자조건·용자절차 등의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용자대상) 기금의 용자대상은 서울특별시종로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용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9조(음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음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음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음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음자하여야 한다.

제10조(음자한도 및 조건 등) ①시설개선자금의 음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음자금리, 음자조건, 음자절차 등 음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음자금 대하) ①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음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음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하에 필요한 서울특별시종로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종로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 4 장 부 정 · 불 량 식 품 등 의 신 고 에 대 한 보 상

제12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20만원 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대상, 신고대상별 보상금액, 보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 등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